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 공포, '20.8.28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2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은 매 3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별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4조)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일학습병행 운영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일학습병행 운영,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일학습병행 직종 개발(안 제6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직종 신설·변경 또는 폐지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일학습병행자격의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라. 학습기업 지정기준 등(안 제8조~제10조)

학습기업을 지정할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기준과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습기업 지정신청,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등 지정방법을 규정함

마. 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운영(안 제11조, 제12조)

학습기업 사업주가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할 경우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등급제 도입, 교육기회 제공,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학습근로계약 해지사유(안 제13조)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불이행,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학습병행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포기 등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함

사. 학습근로시간 산정의 예외(안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의 재학생이 참여하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 및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과

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법 제27조에 따른 학습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실시시간의 예외(안 제16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내부평가(안 제17조)

내부평가의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의 능력단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등 내부평가 방법,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차. 외부평가(안 제18조)

외부평가의 대상은 일학습병행자격 직종의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로 하고,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함. 또한,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는 등 외부평가의 실시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카. 지원, 지원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 등(안 제19조, 제20조)

학습기업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학습기업과 구직자 연계체계 구축, 기업현장교사 지정·운영, 학습근
로자 평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취소 및 자격증 발급, 지원금 지급 및
환수, 지도·점검 등의 사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
라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노동단체 및 사업주단체,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
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3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
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기업 현황 및 일학습병행 훈련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2.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관한 사항
3. 기업현장교사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4.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5. 학습근로자 평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학습병행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역별 일학습병행의 지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일학습병행 운영 참여 및 지원
2. 지역 내 일학습병행 운영,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

제5조(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학습병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일학습병행 직종 개발)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 직종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직종 신설 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종 신설 등의 필요성
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 개발여부
3. 일학습병행 인력양성 수요
4. 국가의 기간·전략산업 직종 해당 여부
5. 해당 자격직종 직무 내용·범위 및 난이도
6.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 실태
7. 일학습병행 훈련 적정 분야 해당 여부
8. 관련 법률에 따른 면허가 필요한 업무인지 여부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7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개발업무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인적자원개

발협의체, 사업주단체 또는 노동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일학습병행 직종의 개발 및 보완
2.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의 개발 및 보완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습기업의 경영 기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용등급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9조(학습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아닐 것. 다만,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한한다.
3.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사업장 외 교육훈련 위탁실시, 훈련직종, 학습근로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일 것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6. 법 제15조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1인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계획을 갖고 있을 것

7. 해당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행정지원 담당자를 1인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계획을 갖고 있을 것

8.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학습기업 지정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기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 지정신청·절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등의 방법으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일학습병행 과정 운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법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 개요
2.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3.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방법
4. 교수기법의 이해
5.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사항

제12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등급제 도입, 교육기회 제공,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제 도입, 교육기회 제공 방법과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일학습병행의 지속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2.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참여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학습병행의 지속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3.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을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교육훈련의 조건 등)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내 교육훈련시설·장비의 확보 및 개선
2. 법 제30조에 따른 내부평가 절차 및 방법의 공정한 운영

제15조(학습근로시간 산정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시간을 말한다.

1.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서 실시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등에서 실시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
3.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

제16조(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실시시간의 예외)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려면 해당 학습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내부평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은 일학습병행의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내부평가는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③ 내부평가는 학습기업 또는 교육훈련이 위탁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도록 한다.

④ 내부평가의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능력단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평가의 평가 방법·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외부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개발된 일학습병행 직종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일학습병행과정의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③ 외부평가의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합격자 공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 응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습근로자의 기업현장교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며,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관리위원, 행정위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지원 방법·절차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2조에 각각 따른다.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 등)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과정의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운영 정지
2.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3.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금 환수 및 추가징수
4.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점검
5. 법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위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실태조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보망 구축·운영

3. 법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실시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
기준 개발
4.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5. 법 제13조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6. 법 제14조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7.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8.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9. 법 제18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취소 등
10. 법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1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승인
12. 법 제30조에 따른 학습근로자에 대한 외부평가
13.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의 발급 및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14.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15. 법 제3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실태 파악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은(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운영, 육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에 따른 지원 및 부정행위에 따른 환수·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평가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단이 지정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실시한 내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는 이 영에 의한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 제1호	200	300	500

다. 법 제25조에 따른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 과정의 인정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 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지도·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 제4호	300	40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3